

# EPR

**E**제는 **P**할수없다 **Re**사이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 / 포장방법검사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란?

“재활용의무생산자(제품·포장재 제조업자, 수입업자,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시행 2003.1.1.)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6조]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제조자, 상표권자, OEM주문자, 수입사 등)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해당합니다.(신고의 의무)

### 01

#### 포장재

- ① 종이팩 ② 유리병 ③ 금속캔(철, 알루미늄)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등의 포장재  
(※ 종이팩의 경우,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

- ④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전제품의 포장재** (단,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유독물제품은 제외)  
※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PET



EPS



PSP



PVC



단일재질 용기류트레이  
PE,PP,PS



필름시트형 및 복합재질

### 02

####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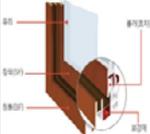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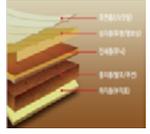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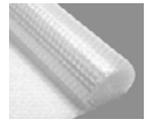
- ① 전지류 ② 타이어 ③ 윤활유 ④ 형광등 ⑤ 수산물 양식용부자 ⑥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⑦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⑧ 합성수지재질의 필름류5종(PVC제외)  
⑨ ('22년 신규품목) 산업용 필름(PE), 교체용 정수기 필터  
⑩ ('23년 신규품목) 안전망(PE,PP),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PE) 관,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PS),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예시)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포장재·제품 품목 예시(식음료 및 화장품 판매업자 등)						
사진 예시	품목명 [품목코드]	설 명		사진 예시	품목명 [품목코드]	설 명
	종이팩 [0110]	일반팩 및 멸균팩 (우유팩, 소주팩 등)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0450]	PE,PP,PS,PET(병제외) 등 단일재질이 사용된 용기, 트레이
	유리병 (뚜껑테 일체형) [0210]	유리병 (와인, 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0460]	복합재질 (다중구조) 용기,트레이
	유리병 (뚜껑테 분리형) [0220]				필름·시트형 포장재 [0460]	비닐 혹은 얇은 막 형태 포장재
	금속캔-철캔 (뚜껑테일체형) [0310]	철 재질 캔	※ 유리병(뚜 껑테일체형/ 뚜껑테분리형) 금속캔(뚜껑일 체형/뚜껑분 리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8p 참고)		브레이크액, 윤활유, 부동액 포장재 [0480]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금속캔-철캔 (뚜껑분리형) [0320]				PP마대 [0490]	PP단일재질
	금속캔 -알루미늄캔 (뚜껑테일체형) [0330]	알루미늄 재질 캔			비료·사료 포장재 [0490]	농가에서 사용하는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합성수지 포장재
	금속캔 -알루미늄캔 (뚜껑분리형) [0340]				윤활유 [0710]	내연기관용 윤활유 등 (단위 : ℓ) ※ 포장재가 합성수지일 경우 포장용기도 신고
	PET병-무색 [0410]	색깔 없는 단일재질 페트병			타이어 [0610]	자동차용 농기계용 등
	PET병-유색 [0411]	색깔 있는 단일재질 페트병			형광등 [0910]	단위는 kg (X) 개 (O)
	PET병-복합재질 [0412]	복합재질 페트병 (맥주 등)			전자류 [0510~0560]	1.수은전지 2.산화은전지 3.리튬전지(1차) 4.니켈카드뮴전지 5.망간·알칼리 망간전지 6.니켈수소전지
	발포합성수지 [0420]	스티로폼 상자 우드락박스 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1010]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PSP (폴리스티렌페이퍼) [0430]	과일 포장, 도시락 등 소포장 트레이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1110]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PVC [0440]	여행용파우치, PTP 포장 등 단일·복합재질 PVC			김발장 [1210]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예시)

제 품 예 시 (※ 붉은색은 22~23년 신규품목)					
사진 예시	품목명 [품목코드]	설 명	사진 예시	품목명 [품목코드]	설 명
	<b>산업용 필름</b> [0813]	PE 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필름·비닐·랩		<b>창틀·문틀</b> [0823]	새시(sash)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 창틀·문틀
	<b>교체용 정수기 필터</b> [0814]	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케이스만 해당		<b>바닥재</b> [0824]	바닥 피복을 위해 사용하는 PVC재질의 마감재
	<b>안전망</b> [0815]	PE, PP재질의 그물		<b>건축용 단열재</b> [0825]	PS재질의 비드를 발포·성형한 제품
	<b>어망</b> [0816]	수산업법의 어업·양식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		<b>전력·통신선</b> [0826]	전선 중 합성수지 재질의 절연물 또는 피복재
	<b>로프</b> [0817]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 만든 줄		<b>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b> [0827]	1. 범퍼 2. 몰딩·가니쉬 3. 언더커버 4. 워셔탱크 5. 냉각수탱크
	<b>폴리에틸렌 관</b> [0818]	PE 재질의 모든 관류 (XLPE 제외)		<b>LED-전구형</b> [0920]	전구형 (컨버터 외장형/내장형 LED램프)
	<b>폴리염화비닐 (PVC) 제품</b> [0819]	PVC재질의 관류, 시트·평판·몰딩류 제품		<b>LED-직관형</b> [0930]	직관형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
	<b>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b> [0820]	1. 밀폐·보관 용기(반찬통, 쌀통, 양념통, 수저통, 도시락 용기 포함) 2. 공기, 대접, 접시, 식판 3. 물병·물통, 컵 (텀블러, 계량컵, 컵 홀더 포함) 4. 도마 5. 식기 건조대 6. 비누통·비누받침, 칫솔꽂이, 바가지, 목욕용 의자 7. 휴지통, 쓰레받기 8. 빨래판, 빨래바구니 9. 화분(받침대 포함) 10. 옷걸이 11. 바구니 12. 수납장(서랍장, 캐비닛, 수납박스, 선반, 책꽂이, 구급함, 공구함, 약통 포함)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대상	<b>필름류 (제품5종)</b>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0460]	에어캡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0460]	세탁소비닐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0460]	플라스틱 봉지·봉투 (폐기물종량제 봉투 제외)
	<b>파렛트 (pallet)</b> [0821]	적재면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의 수평 받침대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0460]	1회용 비닐장갑
	<b>플라스틱 운반상자</b> [0822]	골판지 형태의 플라스틱 상자는 제외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0460]	식품포장랩

##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사항

(※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인 경우, 출고·수입실적서 제출만 해당)

### 01

####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출고·수입실적서) 제출

- 제출기한 : 매년 4월 15일
- 제출대상 :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분담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음)
- 제출방법 :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
- 제출서류 : 전년도 EPR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 또는 수입량 증빙서류 등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 02

#### 재활용의무이행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당해 연도에 납부

- 분담금 : 재활용의무량(kg) × 분담금 단가(원)
- 분담금 공제 방법 : ①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 ② 위탁하여 회수·재활용  
※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자사 회수·재활용실적에 한함)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3항]

## ✓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기준

- 재활용의무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활용부과금 또는 재활용분담금이 발생 할 수 있음

구 분	제조업자		수입업자	
	매출액	출고량	수입액	수입량
종이팩	10억 미만	4톤 미만	3억 미만	1톤 미만
유리병		10톤 미만		3톤 미만
금속캔 (알루미늄캔, 철캔)		4톤 미만		1톤 미만
발포합성수지		0.8톤 미만		0.3톤 미만
합성수지 포장재 및 필름류 제품 5종 (PVC제외)		4톤 미만		1톤 미만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5종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10톤 미만		3톤 미만

※ 재활용의무 면제 여부는 전년도 규모로 산정하며 제품군의 경우 면제 기준 없음(필름류 제품 5종은 제외, 합성수지 재질의 제품 15종(22~23년 신규품목)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 적용)

※ 제조업체는 출고량·매출액, 수입업체는 수입량·수입액 기준을 적용(법인은 합산 규모 적용)하며 제조와 수입을 병행 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재활용 의무가 있으면 출고·수입량을 합산하여 의무량 산정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

## 재활용부과금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발생)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100분의 30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의무 생산자에 부과하여 징수

$$\text{재활용부과금} = \text{재활용의무미이행량(kg)} * \text{기준비용(원)} * \text{재활용비용산정지수} * \text{미이행가산률}$$

\* 재활용의무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출고수입량 x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량 감경량 - 재활용실적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9조]

※ 신규업체는 과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및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최대 5개년) 발생 가능  
[근거 : 국가재정법 제96조, 환경부 예규 제713호 제22조]

## 위반시 제재사항

-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1백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방법

### 01

#### 작성기준

① EPR 대상 제품·포장재 및 해당 품목코드 확인

② 국내제조업체(국내 OEM 주문자 포함)일 경우 ▶ 국내 소비용(사내 소비량, 홍보 및 샘플 등 무상 증정량 포함)으로 출고된 제품·포장재 사용량(수량, 무게) 작성

- 증빙서류 : 제품수불부, ERP 자료 등 수량 증빙



③ 해외수입업체(관세납부자)일 경우 ▶ 판매여부 상관없이 수입(통관기준)한 제품·포장재 수입량(수량, 무게) 작성

- 증빙서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입실적증명서(한국환경공단 제출용), 관세사 자료, 수입신고필증 등 수량 증빙



### 02

#### 제외대상

①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 증빙서류 : 수출신고필증, 수출인정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관세환급신청서,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 등

②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한 경우에만 해당

③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

- 증빙서류 : 폐기물인계서, 세금계산서, 계량표, 폐기제품목록 등

# 03

## 페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사용으로 재활용의무량 감경

제품·포장재 생산에 페플라스틱(국내발생)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경우 [(출고량) x (재활용의무율)]의 5%(매년고시) 범위 이내에서 재활용의무량 감경

제출서류 :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감경 고시 별지 제1호),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감경 고시 별지 제2호), 재활용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

- 관련근거 : 「페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고시」(환경부고시 제2022-278호, 2022.12.30.)

### ✔ 헛갈리는 용어 정리

#### 분담금 vs 부과금

- 분담금 :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 (분담금 납부 = 재활용의무 이행)
- 부과금 :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전년도 재활용 분담금 미납부시) 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

<예>

- ① 재활용의무 면제기준을 넘었을 경우(일정규모 이상)  
전년도에 분담금 납부 (O) → 재활용의무 이행 (O) → 재활용부과금 (X)  
전년도에 분담금 납부 (X) → 재활용의무 이행 (X) → 재활용부과금 (O)
- ② 재활용의무 면제기준을 넘지 않았을 경우(일정규모 이하)  
올해 신고는 종료.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 제출

#### 비대상 vs 규모미만

- 비대상업체 : EPR 대상 제품·포장재를 수입·제조(포장재를 이용한 판매 포함)하지 않는 업체 ⇒ 재활용의무생산자 (X), 출고수입실적 제출 의무 (X), 분담금 (X)  
※ 비대상 신청: EPR시스템 - (로그인 전 통합회원로그인 아래)제도비대상업체 등록하기
- 규모미만 업체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업체  
⇒ 재활용의무생산자 (O), 출고수입실적 제출 의무 (O), 분담금 (X)

#### OEM주문자 vs OEM생산자 vs 단순유통판매자 vs 상표권사용계약자

- OEM주문자 :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따라 자신의 상표(브랜드)로 제품을 주문한자 (유통전문판매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이며 출고수입실적 제출 해야함.
- OEM생산자 :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따라 타사 브랜드의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업체(국내만 해당)  
※ 상표소유권자가 재활용의무 이행하나, OEM생산자도 타사 실적 제출해야 함

- 단순유통판매자 : 상표권 없이 단순 유통판매자는 제도 비대상.
- 상표권사용계약자 : A 판매업자가 B 제조업자에게 제품을 주문하여 판매하면서, C사의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사용을 허락받고 제품에 C사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디자인을 사용한 경우 A 판매업체가 의무 대상

### 유리병 뚜껑테 일체형 vs 분리형

- 뚜껑테 일체형 : 뚜껑테가 없거나, 개봉 후 테가 유리병 목에 남지 않는 것
- 뚜껑테 분리형 : 뚜껑을 개봉하였을 때, 테가 유리병 목에 남는 것



### 금속캔 뚜껑일체형 vs 분리형

- 뚜껑일체형 : 뚜껑을 반복해서 열고 닫도록 사용하게 설계된 경우, 뚜껑과 몸체가 분리되더라도 별도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원터치 분리형 뚜껑이라도 별도로 분리배출표시를 하여 분리수거가 가능한 경우)
- 뚜껑분리형 : 뚜껑부에 손잡이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오픈 시 금속뚜껑과 몸체가 분리되어 통상적으로 반복사용하기 어려운 형태



### PET병 vs PET 단일재질 용기

- PET병 : 용기 중 나선형의 스크류가 있는 목(몸통에서 입구쪽으로 좁아지는 모양을 가진것)과 마개가 있는 모양
- PET 단일재질 용기 : 목과 마개가 없으며, 내용물 또는 포장물품을 넣을 수 있는 그릇 형태의 포장 용기



## 〈기타 참고사항〉

### 무게측정 방법

단위 포장재의 무게는 전자저울 등으로 0.01g 단위로 계량하며, 비닐 등 무게가 가벼운 포장재의 계량방법은 여러 개를 모아서 무게를 재고, 이를 단위 포장재의 개수로 나누어서 개당 평균 중량을 0.01g까지 산출. 이때 소수점 셋째 자리는 절사.



내용물 제거 후 포장재 무게만 측정



이중포장, 다중포장, 별도포장 등인 경우 포장재 각각 측정 후 포장재 품목코드별로 각각 신고



뚜껑·라벨 등 부분품의 재질과 관계없이 부분품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

### 비대상포장재



종이상자



의약품 및 의약외품 중 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 또는 병모양이 아닌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ml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화장품] 퍼프, 집게, 붓펜  
[생활화학제품] 유리병 방향제 등



쓰레기가 아닙니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입니다.

# 포장재 재질·구조평가 제도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란?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지속적인 생산·유통으로 폐기물 회수·선별·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을 저하 및 재활용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시행 2019.12.25.)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2 및 제9조의3]

## 평가제도 개요

평가주체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인 경우 평가의무 면제)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평가대상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평가항목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에 대해 재질의 종류, 해당 색상여부, 몸체와의 분리 용이성 등을 평가
평가등급	4개 등급("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미이행시 조치사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 -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평가를 받는 경우 - 등급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를 하는 경우

## 평가 방법 및 표시 절차

01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재질·구조 단위로 자체 평가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승인 신청



- 신청방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에 자체평가 후 증빙서류 제출
- 평가방법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3-73호)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평가
- 제출서류 : 해당 포장재에 대한 재질·구조 증빙서류(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육안판정결과서, 사진 자료, 시험성적서 등)  
※ 서식 등 참고자료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누리집-고객마당-자료실
- 소요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기준 10일(보완 통보 시 근무일기준 10일 이내 보완)  
- "재활용 어려움"으로 자체평가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며, 공단의 검토·확인 절차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 승인

## 공단 평가 확인 후, 평가 결과 표시(어려움 등급은 의무 표기)

- 표시기한 : 6개월 이내(필요시 9개월까지 연장신청 가능. 단, 재고소진의 목적으로는 연장불가)
- 기타사항 ①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sup>1)</sup> 기록·보관  
②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sup>2)</sup> 제출(매년 4월 15일까지)

1)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www.iepr.or.kr)전산시스템으로 등록하는 경우 같음 가능

의무 표기

'재활용 어려움'  
등급



PP

뚜껑 : HDPE  
재활용 어려움

선택 표기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

## 자주 묻는 질문

### 법 적용 기준

구 분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평가 신청 기준 (제조·수입 또는 판매 허가 이전)	제조 전	수입통관 전	판매 전
표시 기준 (평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제조일	제조일	판매일

- 동일한 재질·구조 포장재의 평가**  
(시스템상 '동일한 포장재가 존재합니다' 문구로 평가신청 안 될 경우)
  - 크기와 용량 등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재질·구조(평가신청시 동일한 체크항목)인 경우 대표품목 1건만 평가 신청하고 제품 목록으로 관리
- 등급표시 의무 면제 대상 포장재**
  - 분리배출표시의 적용예외 포장재
  - 과실주 및 위스키 포장에 사용된 유리병
  -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인정된 경우 등

## 사용금지 포장재에 대한 재질·구조 개선 및 중단 명령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한 의무생산자에게 1년(연장 가능)의 범위 내에서 개선 명령 조치, 개선명령 미 이행시 제조·수입·판매 중단 명령 조치
- 제조·수입·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단 명령을 같은한 과징금 부과(10억 이하)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5 및 시행령 제7조의2]

### 사용금지 포장재(개선 대상)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	비 고
PVC재질의 포장재 (폴리염화비닐리덴 포함)	PVC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레이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를 포함
유색 PET병 열알칼리성 수용액 분리되지 않는 접(접)착제를 사용한 PET병	먹는 샘물 및 음료수에 한함

※2019. 12. 25.부터 사용금지(별도 계도기간 없음)

### 사용금지 적용 예외 대상(사용 가능)

개선 대상 적용 예외 (사용가능 제품·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li> <li>· 수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li> <li>·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li> <li>·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햄류·소시지류(어육소시지포함)</li> <li>· 축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li> <li>·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li> </ul>

참고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9-244호) 제3조제2항

# 분리배출표시제도

## 분리배출표시 제도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4조]

## 분리배출표시제도 개요

- 표시대상**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자원순환보증금 대상 용기 제외)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와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분리배출 표시

※ 위반시 제재사항(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4호)  
: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근거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

기준일	제품의 제조일
표시방법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표시크기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표시재질 문자제외)
표시색상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표시위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다중포장재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 분리배출표시의 적용예외**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및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구분	적용예외 대상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표시 포장재(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나목</li> <li>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용기,트레이류)”, “10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류)”인 경우</li> <li>“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li> <li>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li> <li>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li> <li>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li> </ul>

## 분리배출표시 도안

구분		표시도안
합성수지 재질	무색페트 (투명페트병)	  ※ 먹는샘물 및 음료 등으로 제한[시행 2024.1.1.시행] 이미 제조된 분리배출 표시(무색페트) 제품은 2025.12.31.까지 유예
	플라스틱 (용기·트레이류)	 PET HDPE LDPE PP PS OTHER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
	비닐류 (필름·시트형)	 PET HDPE LDPE PP PS OTHER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
캔류	 철 알미늄	
종이	종이	 ※ 분리배출마크 표기 의무 없음(지정신청·승인 후 도안 사용가능)
	종이팩	 일반팩 멸균팩
유리병		도안파일 다운(AI) 
도포·첩합 등		

- ※ 합성수지재질 중 용기류인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필름·시트형인 경우 비닐류로 구분
- ※ OTHER :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개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 글리콜변성 PET수지(PET-G)가 포함된 재질,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 사용된 경우
- ※ 도포·첩합 등 :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발포합성수지 제외) 제품·포장재의 구성부분에 타 소재·재질(금속, 생분해성 수지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것으로서,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일괄표시**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

	구 성	기본도안	일괄표시
예시 1	주요부분 : 무색페트 뚜껑 : HDPE 라벨 : PP		 무색페트 뚜껑:HDPE/라벨:PP
예시 2	내포장재 : 유리 외포장재 : 종이*		 종이 내포장재 : 유리

\*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 가능(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인 경우 별도 지정승인 절차없이 표시 가능)

# 포장방법검사

## 포장방법 검사란?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도록 포장방법에 관해 검사하는 제도”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 포장방법검사를 왜 해야 하나요? 과대포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지자체(시·군·구 등)에서 수시·정기점검을 실시
-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포장검사명령
-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검사결과 기준초과로 확인된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 **[예방차원에서 사전 포장검사 신청 후 개선]**

## 포장검사 절차



- ① 검사신청 : 포장·의료용기 검사시스템(인터넷검색)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해당검사기관으로 제품(시료) 발송  
(누리집 URL : [www.recycling-info.or.kr/pack](http://www.recycling-info.or.kr/pack))
- ② 접수 : 제품 수령 후, 접수 및 견적서(수수료) 송부
- ③ 검사수수료 납부 : 견적서(수수료) 확인 후, 검사수수료 입금
- ④ 검사진행 : 입금 확인 후, 검사 진행 및 세금계산서(영수증) 발행
- ⑤ 성적서발급 : 검사 완료 후, 시험성적서 발송 및 시료 반환처리(착불)  
※ 검사 기간 : 검사수수료 입금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소요

## 포장검사 수수료

구분		시료당 수수료(원)	비고
포장공간	단위제품 (1회이상 포장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	35,000	모양이 다른 제품 4개 이하
		45,000	모양이 다른 제품 5개 이상
	종합제품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44,000	모양이 다른 제품 4개 이하
		57,000	모양이 다른 제품 5개 이상
포장횟수	단위/종합제품	18,000	

## ☑ 포장방법검사 대상 제품과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포장방법 검사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 02-3153-0503

제품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강서 IT 밸리 8층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 1부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연락처

- 재활용의무생산자 출고·수입실적 : 02-3153-0570
- 포장방법 검사 : 02-3153-0503

##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연락처

구분	공제조합명	대상품목	전화번호
포장재 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포장재 통합관리 (금속캔, 종이팩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02-6948-8700
	한국농수산물재활용사업공제조합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양식용 부자, 비료·사료 포장재, PP마대, 교체용 정수기 필터, 산업용 스트레치 PE필름	02-6952-3270
제 품 군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윤활유, 윤활유 용기	02-2068-6047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전지류	02-6954-0666~8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형광등, LED	02-3785-2883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타이어	02-551-1901
	(사)한국건축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바닥재, 창틀·문틀, PVC제품	02-786-2219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폴리프로필렌(PP)재질의 생활용품	02-2689-6162~3
	(사)한국자동차자원순환공제조합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02-6956-5811
	(사)한국해양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	안전망, 어망, 로프	02-319-9114
	(사)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02-715-0445
	(사)한국폴리에틸렌산업공제조합	폴리에틸렌(PE)관	02-2058-1815
	(사)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	건축용단열재	031-421-0506
	(사)한국전선재활용공제조합	전력·통신선	02-6954-0998

